

# 12월 19일 대통령선거 선거관리보

투표하는 당신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발행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행일 2012년 11월 27일  
주 소 경기도 과천시 홍춘말로 44  
전 화 02-503-1114

## CONTENTS

- 02 공명선거 담화문
- 03 중점 선거관리 방향
- 04 주요 선거일정
- 05 선거사무 세부일정
- 06 후보자 등록 현황
- 07 주요 선거운동 방법
- 08 투표절차 안내
- 09 투표 편의성 및 접근성 강화
- 10 선상투표 제도 안내
- 11 매니페스트 정책선거
- 12 위원회 홍보 활동
- 14 과태료·포상금 안내
- 15 공명선거 만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이 관리보는 공직선거에 있어 공명선거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정당·후보자, 시민사회·종교단체, 언론 등 여론을 주도하고 계시는 분들께 보내 드립니다.
- 이 관리보는 귀중한 세금으로 만든 것이니 돌려 보도록 하여 주시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홍보사이트(<http://vote.necpr.go.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공명선거 담화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능환**

## 대통령선거를 온 국민의 축제로 만듭시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로써 제18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등록이 마감되고, 내일부터 선거일인 12월 19일까지 23일간의 선거기간이 개시됩니다. 이에 따라 선거운동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관리기관의 결정과 판단을 존중하고 승복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출발한다고 하였습니다.

후보자나 정당 또는 선거에 관여하는 사람이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과 판단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비난을 일삼는다면, 선거가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공직선거법은 선거공영제에 따라 선거비용액의 한도를 정하고 이를 보전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선거운동의 주체와 방법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각 후보자와 정당 및 선거운동을 하려는 모든 사람과 단체는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수단과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아서가 아니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흑색선전을 해서도 안 됩니다.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가운데 품위를 지키고, 정정당당하게 정책으로써 경쟁하여 유권자의 지지를 받도록 노력해야 마땅하겠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정부기관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과 선거운동 금지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종교인과 종교단체는 정치와 종교의 분리원칙을 지켜야 하며, 언론은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를 함으로써 유권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거관리위원회는 좌우, 보수와 진보, 여야, 무소속을 가리지 아니하는 엄정중립의 자세로 공정하게 이번 대통령선거를 관리하고, 부정과 불법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부정이나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에게 나라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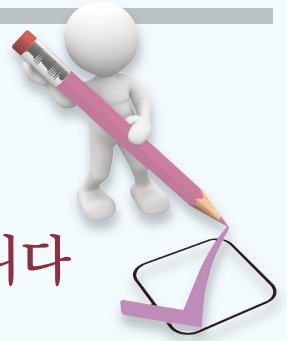
그러나 부정이나 불법을 가장 먼저, 제일 잘 알 수 있는 분은 바로 국민 여러분이십니다. 그 최종적인 판단 또한 국민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 결과를 선거일에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로써 보여 주십시오.

이번 대통령선거가 국민 여러분의 엄정한 판단 속에 온국민의 축제로 승화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하며 기대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 11. 26.



## 중점 선거관리 방향

# 엄정중립 ·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공명선거 정착을 위한 국민공감 홍보활동의 전개

우리 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정책과 각종 활동상황을 언론을 통해 상세히 알리고, 범국민적 공명선거 실천분위기 및 투표참여 공감대 확산을 위해 유권자에 대한 선거정보 접근성 및 투표 편의성 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전 국민 대상의 보편적인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공명선거를 위한 국민공감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 유권자에 대한 선거서비스 제공

효율적인 선거관리 체제를 구축·운영하여 후보자 정보 및 투·개표 진행상황 등 유권자 관심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투표소 찾기서비스를 강화하여 투표편의성을 도모하는 가운데 법규운용의 통일성을 확보하여 국민만족의 법규안내서비스 제공 및 장애인 유권자, 거동불편자 등 선거참여 취약계층에 대한 투표접근성을 확대하여 유권자가 공감하는 공정하고 흠 없는 선거관리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실현을 위한 사전예방·단속활동 강화

사후조치보다는 사전예방 활동에 중점을 두며, 불법적인 선거개입 우려가 있는 단체나 비방·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인터넷 게시자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하고, 위법·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통해 형평성 논란을 차단하여 조치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선거풍토를 조성하고 특히, 비방·흑색선전 조사팀과 특별기동조사팀 운영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촉진

후보자의 충분한 정보 제공을 통해 유권자의 공약정보 접근성을 확대하고 언론·시민단체 등과 연계한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정책선거 분위기를 유도하여 정견과 정책 경쟁에 의한 정책선거가 실현되도록 정책선거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 주요 선거일정

### + 후보자등록 신청 : 11월 25일(일) ~ 11월 26일(월)

- 후보자등록기간은 2일간이며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 +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11월 26일(월) ~ 11월 28일(수)

- 구·시·군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구·시·군청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선거인명부를 볼 수 있으며, 누락되었거나 잘못 기재된 부분이 있으면 이의신청을 통하여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 + 선거벽보 첨부 및 선거공보 발송 : 12월 2일(일) ~ 12월 12일(수)

- 선거벽보는 12월 2일(일)까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에 붙이게 됩니다.
- 책자형 선거공보는 12월 5일(수)까지, 전단형 선거공보는 투표안내문과 동봉하여 12월 12일(수)까지 각 가정에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 후보자 정보공개

책자형 선거공보 둘째면에 후보자의 재산상황, 병역사항, 세금납부 및 체납실적, 전과기록, 직업·학력·경력 등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게재하므로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 부재자 투표 : 12월 13일(목) ~ 12월 14일(금)

- 부재자투표는 2일간이며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 부재자투표용지를 받은 사람은 주소지와 상관 없이 전국 어디서나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한 가까운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 부재자신고서 거소에서 투표하겠다고 신고한 사람은 투표용지를 받은 즉시 기표하여 선거일(12월 19일) 오후 6시까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되도록 보내면 됩니다.
- 부재자투표용지를 받았으나 부득이 부재자투표를 하지 못한 사람은 선거일(12월 19일)에 해당 투표소에 가서 투표관리관에게 부재자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반납하고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 + 선거일 투표 : 12월 19일(수)

- 투표장소나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는 투표안내문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으며, 투표하러 갈 때에는 본인의 등재번호 인쇄부분을 갖고 가면 빨리 투표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명서가 없으면 투표할 수 없으므로 투표소에 가실 때에는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공무원증이나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장애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 등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명서를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합니다.



## 선거사무 세부일정은 이렇습니다

시행일정	요일	실시사항	기준일
11. 21부터 11. 25까지	수 일	선거인명부 작성 부재자신고 및 부재자신고 인명부 작성	선거일 전 28일부터 5일 이내
11. 25부터 11. 26까지	일 월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 ~ 오후6시)	선거일 전 24일부터 2일간
11. 27	화	선거기간 개시일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
11. 29까지	목	선거벽보 제출	후보자등록 마감일 후 3일까지
12. 2까지	일	선거벽보 첨부	제출마감일 후 3일까지
		책자형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 마감일 후 6일까지
12. 5까지	수	책자형 선거공보 발송	제출마감일 후 3일까지
12. 5부터 12. 10까지	수 월	재외투표소 투표 (매일 오전8시 ~ 오후5시)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 중 6일 이내
12. 6까지	목	전단형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 마감일 후 10일까지
12. 10까지	월	부재자 투표용지(책자형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발송 및 선상투표용지 전송	선거일 전 9일까지
12. 10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 전 9일에
12. 11부터 12. 14까지	화 금	선상투표	선거일 전 8일부터 5일까지 기간 중 선장이 정한 일시
12. 12까지	수	투표안내문(전단형 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 확정일 후 2일까지
12. 13부터 12. 14까지	목 금	부재자투표소 투표 (매일 오전6시 ~ 오후4시)	선거일 전 6일부터 2일간
12. 19	수	투표 (오전6시 ~ 오후6시)	선거일
		개표(투표종료 후 즉시)	
2013. 2. 27까지	수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 후 70일 이내

## 후보자 등록 현황

### + 대통령선거 후보자 등록 현황

기 호	정당명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 세 )	직 업	비 고
1	새누리당	박 근 혜	여	52. 2. 2.(60세)	정치인	
2	민주통합당	문 재 인	남	53. 1. 24.(59세)	국회의원	
3	통합진보당	이 정 희	여	69. 12. 22.(42세)	변호사	
4	무소속	박 종 선	남	28. 12. 10.(84세)	무직	
5	무소속	김 소 연	여	70. 1. 23.(42세)	노동자	
6	무소속	강 지 원	남	49. 3. 17.(63세)	변호사	
7	무소속	김 순 자	여	55. 7. 6.(57세)	청소노동자	

### +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현황

구 분	시·도명	선거구명	정 수	후보자수	경쟁률	비 고
시·도지사선거	경상남도	경상남도	1	3	3.0:1	
교육감선거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1	5	5.0:1	
구·시·군의장선거	인천광역시	중구	1	2	2.0:1	
	광주광역시	동구	1	3	3.0:1	
	경상북도	경산시	1	6	6.0:1	
시·도의회의원선거	-	-	2	6	3.0:1	
구·시·군의회의원선거	-	-	19	58	3.1:1	

※ 최고 경쟁률 ⇒ 8:1(삼척시 나선선거구), 최저 경쟁률 ⇒ 2:1(중랑구 가선거구 등 10곳)



## 주요 선거운동 방법은 이렇습니다

대통령선거에서 정당과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법정선거운동 방법은 인쇄물, 언론매체, 거리연설, 대담·토론 등이 있으며, 이러한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11월 27일)부터 선거일 전일(12월 18일)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 + 주요 선거운동 방법

구분	선거운동매체	횟수·방법 등
인쇄물	선거벽보	선거인의 통행이 많은 곳의 통행인이 보기 쉬운 건물 또는 게시판 등에 첩부
	책자형 선거공보	부재자신고인과 매세대에 우편발송
	전단형 선거공보	매세대에 우편발송
	선거공약서	세대수의 10/100수 이내로 배부
언론매체	신문광고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가 총 70회 이내
	방송광고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가 TV·라디오 각 30회 이내(1회 1분 이내)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후보자와 후보자가 지명한 연설원이 TV·라디오 각 11회 이내(1회 20분 이내)
	방송시설 주관 후보자의 방송연설	TV·라디오방송사 자체부담으로 방송연설
	경력방송	KBS TV·라디오 방송별로 각 8회 이상 실시
	방송시설 주관 경력방송	KBS 외의 TV·라디오방송사 자체부담으로 실시
거리연설	공개장소 연설·대담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과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중에서 지정한 사람이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연설·대담
대담·토론	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단체가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실시
	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언론기관이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실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후보자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3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
기타	현수막 게시	읍·면·동마다 1매
	어깨띠 등 소품	후보자와 배우자(직계존비속 중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가 사용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도로·시장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호소
	선전물 부착 자동차·선박 운행	자동차와 선박에 선거벽보·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 부착 운행
	정보통신망 이용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면 누구나
	인터넷 광고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후보자가 인터넷언론사의 홈페이지 이용 선거운동광고 실시

# 12월 19일, 투표에 빠짐없이 참여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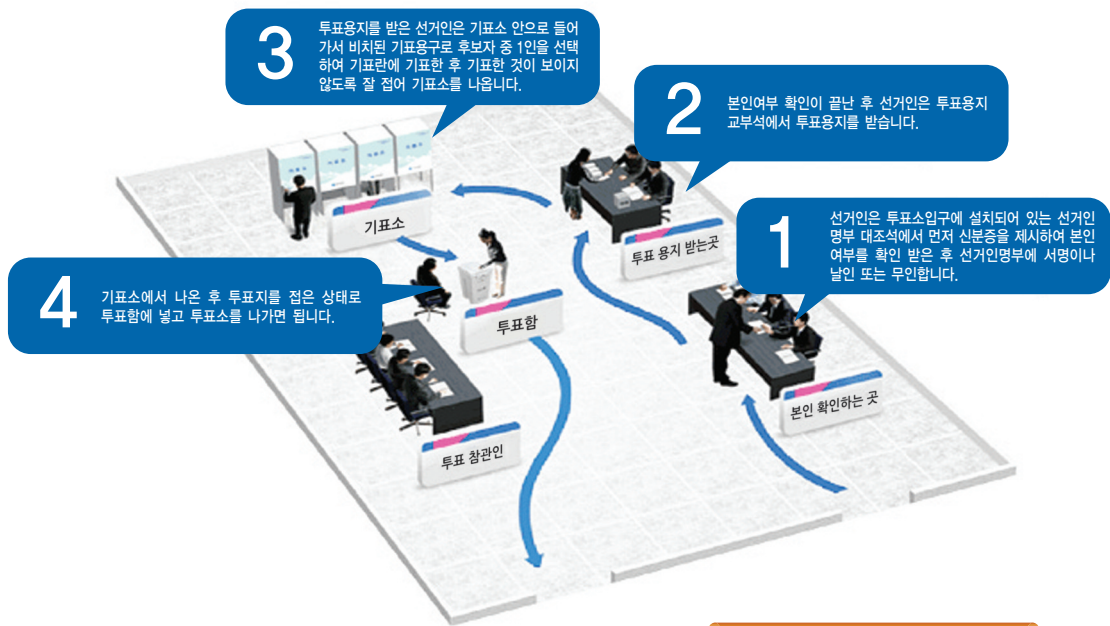
(93년 12월 20일 이전 출생, 만19세 이상)

+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 투표하러 가실 때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반드시 가지고 가져야 합니다.

※ 신분증명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장애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외국인등록증·자격증 등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

+ 투표절차



+ 자신의 투표소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

- 선거공보와 함께 배달되는 투표안내문에 투표소의 위치와 약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 선거홍보사이트(<http://vote.necpr.go.kr>), 모바일 웹(<http://m.nec.go.kr>) 및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투표소 찾기 메뉴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입력하면 투표소의 위치와 약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선거관리위원회(국번없이 1390번)에 전화하셔도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선거권 보장 관련 법률

####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 ③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 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④선거권자는 성실하게 선거에 참여하여 선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법 제10조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110조)



## 투표 편의성 및 접근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투표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 장애인 및 노약자 등에 대한 투표편의 제공

- 거동불편 장애인 투표소 이동통로 확보, 휠체어 이동통로 미설치 투표소에 임시경사로 설치, 투표소에 장애인 투표편의 지원 매뉴얼 제작·보급
- 투표소 안내 도우미에 대한 예절교육 강화, 투표소 안내 사이트에 시각장애인 음성 서비스, 점자형 투표안내문에 음성변환 2차원 바코드를 인쇄하여 발송하는 등 장애인 유권자에 대한 투표편의를 강화하였습니다.

### + 교통불편지역 선거인에 대한 교통편의 확대

-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의 투표참여 촉진을 위해 정당·후보자의 동의(과반수)를 받아 교통편의 제공을 확대·실시하였습니다.
- 지난 국회의원선거 이후 교통편의 제공확대를 위해 제공요건을 1일 대중교통 운행횟수를 현행 '4회 이내'에서 '6회 이내'로 완화하였고, 투표안내문에 장애인·노약자 등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 안내정보를 게시할 예정입니다.

### + 다문화 가정 유권자 투표편의 제공

- 선거절차 등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외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로 제작한 투표안내문을 배부합니다.
- 특히,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모의투표소 운영과 투표절차교육 등을 실시하여 다문화가정 유권자의 투표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 투표소 찾기 서비스 개선·확대

- 매세대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에 투표소 위치와 약도 게재
- 투표소를 변경할 경우 변경전 투표소 입구에 투표소 변경 안내 현수막 게시, 투표안내도우미 등 배치
- 위원회홈페이지 및 주요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네이버, 네이버)에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 제공
- 구·시·군위원회별 투표소 찾기 서비스에 대한 전화질의 적극 응대
- 매월 구·시·군청에서 발행하는 반회보·소식지 등에 투표소 안내



## 선상(船上)투표 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 + 대상선거

- 대통령선거 및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 + 선거권자

-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인 해외취업선 · 원양어선 · 외항여객선 · 외항화물선의 승선선원



### + 선상투표 주요 절차

- ① 선원에게 선박회사를 통해 선상부재자신고 안내 및 서식, 용품 등 송부
- 기한 : 2012. 11. 19까지
  - 주체 : 중앙선관위

- ⑤ 선상투표 후 주민등록지 시·도선관위에 투표지 전송(팩스)
- 기간 : 2012. 12. 11 ~ 12. 14
  - 주체 : 승선 선원

- ② 부재자신고서 작성 후 주민등록지 구·시·군의 장에게 팩스 송부
- 기간 : 2012. 11. 21 ~ 11. 25
  - 주체 : 승선 선원(해당선박 선장 확인)

- ⑥ 선상투표지 수신 및 봉투투입·봉함 후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우송
- 기간 : 2012. 12. 11 ~ 12. 19
  - 주체 : 주민등록지 시·도선관위

- ③ 부재자신고서 접수 및 관할구·시·군선관위에 송부
- 기간 : 2012. 11. 21 ~ 11. 25
  - 주체 : 주민등록지 구·시·군의 장

- ⑦ 선상투표지 우편접수 및 투표함 투입
- 기한 : 2012. 12. 19. 18:00까지
  - 주체 : 구·시·군선관위

- ④ 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된 선원에게 투표용지 발송(팩스)
- 기한 : 2012. 12. 10까지
  - 주체 : 구·시·군선관위

- ⑧ 선거일 개표
- 시기 : 2012. 12. 19. 18:00 후
  - 주체 : 구·시·군선관위

### + 의미

- 선원들의 국민 4대 의무(근로, 국방, 납세, 교육의무) 수행에 합당한 국민의 참정권 실현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국가정책에 대한 투표권행사로 자긍심·애국심 고취

## 정책·공약 꼼꼼히 비교 -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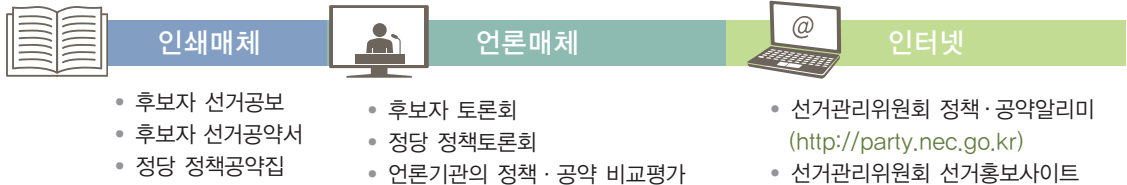
### + 매니페스토(manifesto)란?

- 선거에 임하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유권자들에게 당선되면 실천하겠다고 문서로 제시하는 약속으로 구체적 목표, 실시 기한, 이행방법, 재원조달방안, 공약간 우선순위를 담은 공약입니다.
- 유권자는 정당·후보자의 공약을 꼼꼼하게 비교하여 실현가능성이 높은 공약을 제시한 정당·후보자에게 투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선거 후에는 유권자는 당선자의 임기 동안 자신이 제시한 공약을 실천하고 있는지 검증하고 평가하여 다음 선거에 지지여부를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 | 매니페스토 과정(흐름) |



### + 어떻게 매니페스토공약을 확인할 수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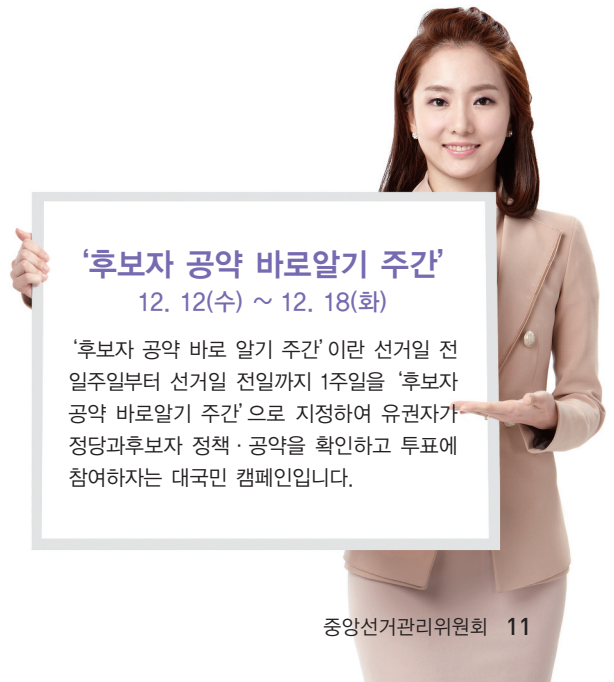
- 후보자 선거공보
- 후보자 선거공약서
- 정당 정책공약집

- 후보자 토론회
- 정당 정책토론회
- 언론기관의 정책·공약 비교평가

- 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알리미 (<http://party.nec.go.kr>)
- 선거관리위원회 선거홍보사이트 (<http://vote.necpr.go.kr>)
- 각 정당·후보자 홈페이지

### + 유권자가 직접 참여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벤트]

- 생활에서 느낀 지역현안이나 국가정책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약은행에 제안해 주시면 공약은행이 후보자들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 ▶ 기간 : 2012년 9월 10일 ~ 2012년 12월 19일
  - ▶ 내용 : 제18대 대통령선거 정책분야별 유권자 희망공약 온라인 공모
  - ▶ 당첨자발표 : 12월 28일
  - ▶ 방법 : 정책·공약알리미(<http://party.nec.go.kr>) 및 모바일 앱을 통한 공약은행 접속
    - ※ 스마트폰, 태블릿PC에서 '정책·공약알리미' 앱 다운로드 후 이용 가능
  - ▶ 공약제안시 유의사항
    - 실현가능한 내용을 공약으로 제안합니다.
    - 구체적인 공약을 성실하게 제안합니다.



# 위원회 홍보 활동



### + 공명선거 온라인 홍보대사 이승기 위촉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월 31일 탤런트 겸 가수 이승기씨를 공명선거 온라인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주요 포털사와 공명선거 및 투표참여 공동캠페인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 위촉된 공명선거 온라인 홍보대사는 온라인상 공명선거 캠페인 홍보와 각종 홍보물에 모델로 출연하는 등 바르고 깨끗한 선거문화 조성과 유권자의 적극적인 투표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인터넷이 선거여론형성 및 정보공유의 장으로서 공명선거와 투표참여 공동 캠페인을 통한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포털3사(네이버, 다음, 네이트)와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 + 7대 종단 종교지도자 간담회 개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월 9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7대 종단 종교지도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7대 종단 지도자들과 함께 국민화합을 기원하고 공명선거 동참을 호소하는 내용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였습니다.
- 이날 행사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능환 위원장과 대한불교조계종 자승 총무원장,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홍재철 대표회장,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김희중 대주교, 원불교 남궁성 교정원장, 유교 최근덕 성균관장, 천도교 이범창 종무원장,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한양원 회장 등 7대 종단 지도자들이 참석하여 범종교적 차원에서 대선이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축제의 장으로서 희망과 꿈을 갖고,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역사적인 선거가 되도록 바르고 깨끗한 선거로 치르는 데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

## 천하우락재선거와 7대 종단 지도자들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9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 호텔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7대 종단 종교지도자 회의'가 열렸다. 캘리그래퍼 이상현 씨가 완성한 '천하우락재선거(天下憂樂在選舉)' 앞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능환 위원장, 캘리그래퍼 이상현 씨, 홍재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자승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김희중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대주교, 최근덕 유교 성균관장, 이범창 천도교 종무원장, 남궁성 원불교 교정원장, 한양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 pdj6635@yna.co.kr





### + 언론매체 이용 홍보활동

-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슬로건(‘깨끗한 선거 대한민국의 얼굴입니다’)과 공명선거 홍보대사(김병만, 조수미, 지상파 3사 아나운서 등)을 활용하여 TV-CF 3편(준법선거, 정책선거, 투표참여)을 제작하여 지상파(KBS, MBC, SBS), 케이블 TV, 종합편성채널 등 방송, 라디오 및 신문광고 등을 통해 일관된 통합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 + 인쇄·시설물 이용 홍보활동

- 공명선거 홍보대사인 지상파 3사 아나운서(조수빈, 배현진, 박선영)와 개그맨 김병만씨를 모델로 공명선거 기원 홍보포스터를 제작하여 통행인이 보기 쉬운 건물 또는 게시판 등에 붙이고, 리플릿을 제작하여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금융기관 등의 민원실, KTX 등에 비치하였습니다.
- 또한 준법선거·정책선거·투표참여 현수막, 육교현판, 홍보탑 등 시설물을 전국 거점 지역에 게시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대통령선거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 + 인터넷매체 이용 홍보활동

-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정확한 선거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콘텐츠 제작 및 캠페인 등을 통한 네티즌들의 선거관심과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 및 투표참여 제고를 위해 선거홍보사이트(<http://vote.necpr.go.kr>)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 선거홍보사이트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선거일정, 투표절차와 투표소 찾기, 투·개표상황 등 선거관련 소식
  - 후보자 인적사항, 후보자공약 및 후보자토론회 일정 등 후보자관련 정보 제공
  - 기타 선거관리위원회 홍보대사 활동상황, 공명선거 CF 홍보동영상 등 제공
- 선거명예기자가 선거현장을 직접 체험하면서 작성한 기사를 게재하는 블로그 「공명이와 함께하는 선거이야기 (<http://nec1963.tistory.com>)」를 통해 살아있는 선거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 정치인의 축·부의금, 미풍양속이 아니라 불법입니다



불법기부행위는 부정선거입니다!

##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음식물 받으면 과태료 **최고 3천만원**



‘방한그릇 짚이야’  
10배 ~ 50배 물어야!

- 선거와 관련하여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 받은 경우
  -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 등으로부터 주례행위를 제공받은 경우
  -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금액(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례를 제공받은 경우 200만원 부과)
  - 특히,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물품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법 안내·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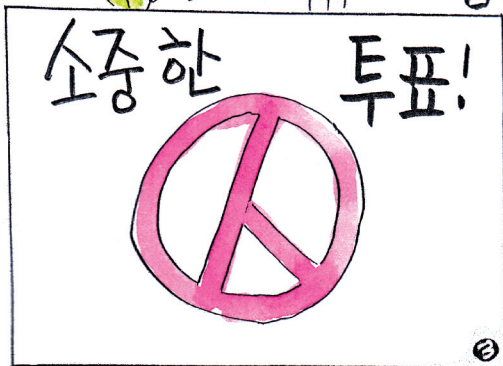
##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5억원**

선거범죄를 목격하시면 바로 신고해 주세요.

- 중대 선거범죄 등 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비방·흑색선전행위
  -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
  - 사조직·유사기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 공무원의 불법선거 관여행위
  - 금품·향응제공 등 돈 선거

선거법 안내 선거범죄 신고 **선거콜센터** 1390

※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 선거와 관련하여 UCC, 트위터 등을 이용하여 후보자 및 그의 가족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아이들의 미래에 우선 투자해도 될까요?



대한민국을 위해 푸른 숲을 더 만들어도 될까요?



대한민국을 위해 일자리를 먼저 늘려도 될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www.nec.go.kr



만19세 이상 (93.12.20 이전 출생) 투표하세요

|투표시간| 오전 6시~오후 6시

12월 19일 투표하러 가실 때에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투표소 찾기, 이렇게 하주세요

투표소는 세대별로 우송되는 투표안내문과 중앙선관위 (www.nec.go.kr) 및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그리고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선거콜센터 (1390) 전화를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12.13 부터)